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572번
-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발 의 일 : 2019년 3월 29일
- 회 부 일 : 2019년 4월 3일

2.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6조제3항).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입법예고(2019.2.21. ~ 3.13.)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영어 및 창의마을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이용료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5범위에서 금년 말(2019.12.31.)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
-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IMF 극복방안(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 내수소비·소득투명성 확대, 세금탈루 억제 등)의 부작용(무분별한 소비, 신용불량자 양산 등)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과도한 사회적 비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 중간매개자-VAN¹⁾사와 PG²⁾사의 수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였음.

-
- 1) VAN(Value-Added Network)이란, 부가가치 통신망이라는 뜻으로 가맹점과 카드사간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여 수많은 매장들과 카드사들이 일일이 계약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VAN사는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카드승인 중계업무를 수행하며, 동시에 가맹점이 카드결제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카드 매출데이터를 정리하고 제출된 카드전표 매입업무를 대행한다. 이에 카드사는 VAN사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 2) PG(payment Gateway)사는 온라인 카드결제 혹은 전자결제가 가능하도록 전자지불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용카드, 핸드폰, ARS, 계좌이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모든 온라인 결제를 대행하고 카드사나 금융기관과의 결제중계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카드결제의 경우에는 PG사가 온라인가맹점과 최종당사자인 카드사를 직접 중계하지 않고 VAN을 거쳐 중계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PG사와 VAN사, 카드사까지 3단계에 걸쳐 수수료를 지불한다.

〈 제로페이의 결제 흐름도 〉



※ 제로페이(간편결제시스템, 모바일 직불결제 시스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이 협력하여 도입한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계좌이체를 이용한 결제방식임.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³⁾

※ 소상공인의 기준 중 상시 근로자 수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⁴⁾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 QR코드

QR은 'Quick Response'의 약자로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바코드와 비슷하나, 활용성이나 정보성 면에서 바코드보다는 진일보한 코드 체계이다. QR코드에 인터넷 주소(URL), 사진, 동영상, 지도 등을 담을 수 있어 최근에는 홍보·마케팅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해소와 함께 제로페이 사용

3) 별첨1.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4) 별첨2.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 수 기준)

활성화,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전가(가맹점주 및 소비자)를 차단하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금번 임시회에 제로페이 결제 시 주차요금, 이용료, 사용료, 학습비 등 할인 관련 조례가 총 17건⁵⁾이 제출되어 있음.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생략) <u><신설></u></p>	<p>제6조(이용료의 감면) <u>③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제5조의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 다만, ① 사용료 감면의 조례 규정 가능 여부, ② 감면범위의 적정성, ③ 영어·창의마을의 결제형태에 따른 감면의 효율성, ④ 영어·창의마을이 소상공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⑤ 제로페이 정책의 타당성, ⑥ 감면기간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먼저, 「지방자치법」⁶⁾은 조례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 등을

5) 별첨3. 참조, 제로페이 관련 사용료 등 감면 관련 조례 제출 현황

6) 「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용료 등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⁷⁾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7) 「지방자치법」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방세징수법」⁸⁾은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제로페이로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는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 둘째, 감면내용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을 제로페이 결제자로 하고, 감면비율은 수요와 이용요금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 부분은 일면 타당하게 보이나, 평생교육국은 제로페이 감면적용에 있어 다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중복적용을 배제하고자 하고 있어, 결제총액의 17.1% 규모인 중복감면(사회적 배려계층 : 이용료 100%감액, 다둥이 : 이용료의 50%감액) 사항에 중복적용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영어·창의마을의 감면액 〉

(단위: 천원)

	결제 총액 (A)	감면총액		사회적 배려계층		다둥이(3자녀 이상)	
		금액(B)	비율(B/A)	금액(C)	비율(C/A)	금액(D)	비율(D/A)
소계	14,571,982	4,714,407	32.4%	4,143,740	28.4%	570,667	3.9%
2016	5,604,474	1,510,873	27.0%	1,331,866	23.8%	179,007	3.2%
2017	4,546,856	1,507,991	33.2%	1,304,251	28.7%	203,740	4.5%
2018	4,420,652	1,695,543	38.4%	1,507,623	34.1%	187,920	4.3%

〈 최근 3년간 영어·창의마을의 감면인원 〉

(단위: 천원)

	총 사용인원 (A)	총 감면인원		사회적 배려계층		다둥이	
		인원(B)	비율(B/A)	인원(C)	비율(C/A)	인원(D)	비율(D/A)
소계	216,722	37,107	17.1%	26,466	12.2%	10,641	4.9%
2016	74,727	11,723	15.7%	7,924	10.6%	3,799	5.1%
2017	69,678	11,485	16.5%	7,997	11.5%	3,488	5.0%
2018	72,317	13,899	19.2%	10,545	14.6%	3,354	4.6%

8) 「지방세징수법」24조(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해당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로페이 의 중복 적용 〉

- 중복 적용 : 다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적용 배제
 - ▶ 장애인·국가유공자(80%), 다둥이(30~50%), 경차·저공해차량(50%), 요일제 참여(30%), 사회적 배려 계층(100%), 단체할인 등 기존할인율이 높아 제로페이 추가 할인에 따른 유인효과가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미추진
- 출처 :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시장방침), 4p 발취

○ 제로페이 사용 할인으로 인한 영어·창의마을의 추가적인 감면손실을 2천8백만원 규모로 추계하고 있고,

〈 영어·창의마을 사용료 제로페이 감면 손실액 추계 〉

	사업수익(17.1~12월)	감면손실액(3%할인)	한시적 적용(8개월)
금액	1,223,973	11,016	7,344

	사업수익(17.1~12월)	감면 손실액(5%할인)	한시적 적용(8개월)
금액	1,223,973	18,360	12,240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제로페이 감면손실액을 393개 시설에 51억원 규모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중 출자·출연·민간위탁기관 등에서 감면하는 45억원은 감면보전이 필요하나, 감면보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바, 본 개정조례안의 의결이 추후 추가경정예산에 심의·의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재정투자 대비 유인효과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제로페이 적용 가능 시설 〉

(단위:개소)

구분	계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주차시설	기타
계	393	38	87	20	71	5	134	38
市 직영	164	9	68	6	57	-	6	18
민간위탁	159	27	17	13	14	5	67	16
투자기관	66	2	2	-	-	-	60	2
출연기관	4	-	-	1	-	-	1	2

※ 출처 : 서울시 공공시설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시장방침, 2019.3.1.)

〈 제로페이 할인 적용시 수입감소 추계 〉

(단위:백만원)

구분	계	직영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연간	8,842	1,037	444	7,361
(5~12월)	5,158	605	259	4,294
			(소계: 4,553)	

※ 연간 감소분을 기준으로 제로페이 감면 시행기간 7개월(5월~12월) 환산 추계
 ※ 출처 : 공공시설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시장방침, 2019.3.1.)

〈 제로페이의 손실보전 〉

○ (손실보전) : 민간(선지원 후 정산), 공공(선시행 후 보전)

- 서울시 : 민간위탁시설은 수입감소로 인한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19년 민간위탁금 추가편성을 통한 선지원

투자·출연기관은 '20년 출자금·출연금 조정을 통해 보전

출처 :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시장방침), 3p 발취

○ 셋째, 영어·창의마을의 프로그램 이용 형태와 결제수단의 비율을 살펴보면, 단체입소가 70.5%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 등 단체에서 개인의 이용료를 수합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76.6%를 납부하고 있어, 제로페이 사용으로 인한 할인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제로페이 사용 할인혜택을 영어·창의마을에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영어·창의마을 결제 현황 〉

(단위 : 천원, %)

연도	총 금액	결제자 구분		결제 수단 구분			
		단체결제	개인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현금결제	
소계	비율	100%	70.5%	29.5%	23.2%	76.6%	0.2%
	금액	14,571,982	10,276,167	4,295,815	3,383,871	11,159,024	29,087
2016	5,604,474	3,965,486	1,638,988	1,192,195	4,394,699	17,580	
2017	4,546,856	3,038,934	1,507,922	1,137,764	3,403,046	6,046	
2018	4,420,652	3,271,747	1,148,905	1,053,912	3,361,279	5,461	

※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재구성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소재 영어·창의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침익적 내용이 없고, 수익적 내용을 담고 있어 조례로 규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조례는 속지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바, 대상을 모든 제로페이 사용자에서 서울시민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넷째,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부담 감소 및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부가서비스 제공 비용, 중간매개자 수익 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부가서비스(이용료 감면) 제공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부가적으로 영어·창의마을이 소상공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영어·창의마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평생교육시설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을 상회하고 있어 소상공인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시민들의 제로페이 사용 경험 및 체험과 유인을 위해 영어·창의마을, 운영법인, 시민에게 실익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의 활성화를 위해 영어·창의마을 사용료의 한시적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거나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19년 현재 영어·창의마을 인력 현황 〉

(단위:명)

	소계	직원	강사	비고
풍납창의마을	24	24	-	(창의마을강사 22명)
수유영어마을	55	15	40	-
관악영어마을	32	16	16	-

※ 풍납창의마을의 강사는 외부강사로 인력현황에서 제외됨.

○ 다섯째,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인하(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⁹⁾)하여, 연매출이 소액인 가맹점에서는 신용카드와 제로페이의 수수료 격차가 감소하였고,

〈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

가맹점 구분(연 매출액 기준)			현행	개선안	인하폭
신용 카드	우대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3억원	0.8%	0.8%	-
		3~5억원	1.3%	1.3%	-
		5~10억원	약 2.05%	1.4%	약 0.65%p
		10~30억원	약 2.21%	1.6%	약 0.61%p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30~100억원	약 2.20%	평균 1.90%	평균 0.3%p
		100~500억원	약 2.17%	평균 1.95%	평균 0.22%p
체크 카드	우대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3억원	0.5%	0.5%	-
		3~5억원	1.0%	1.0%	-
		5~10억원	약 1.56%	1.1%	약 0.46%p
		10~30억원	약 1.58%	1.3%	약 0.28%p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30억원 초과	약 1.60%	평균 1.45%	평균 0.15%p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18년 적격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수수료 개편 부담은 낮추고, 혜택은 넓히고, 공정성은 높이겠습니다.) 2018.11.26. _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3p 발췌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로페이는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계좌이체도 금융기관(은행) 간 수수료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신용카드사를 계열사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로페이 정책에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동기가 없을 수 있으며,

제로페이 이용자가 기존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신용공여기능(후불결제 기능), 포인트 적립, 편리성, 실적에 따른 대출이자율 감면 등 편익을 포기하고 제로페이를 이용할 충분한 유인효과도 적다고 하겠음.

9)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11.26.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 - 중복응답 >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기 때문	50.9%
포인트, 마일리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41.0%
잔돈을 주고받지 않아 결제과정이 간편하기 때문	37.5%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31.2%
통장 잔액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기 때문	20.1%
할부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	19.0%
기타	0.2%

출처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9. 조세특례 심층평가(1)_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200p

- 또한,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결제방식이 용이하거나,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결제 방식에 주력하는 등 사용자(판매자)에게도 유인동기가 적을 수 있고,
- 한정된 시장에서 공공기관의 제로페이 활성화는 이미 보급을 시작한 민간의 직불 결제 방식(체크카드 및 민간회사의 직불결제 시스템(네이버, 카카오 등))과 중복 소지도 있으며,
- 제로페이는 신용카드의 단점을 보완한 대체제가 아닌 ‘소비자의 선의에 의지하여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여섯째, 안 부칙 제2조는 본 감면의 유효기한을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¹⁰⁾」에서는 조례에 따른 감면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제로페이 사용에 따른 감면은 한시적(약 6개월 간, 2019.12.31.까지)인 것으로 상위법령에는 부합하다고 하겠으나,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제로페이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감면기간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감면기한을 확장설정(2020년 12월 31일 이후까지)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제로페이의 적용기한 〉

○ (적용기한)'19년 말까지 적용(필요시 1년 연장)

- 제로페이 사용검험을 통한 이용자 확산 유인정책인 점, 수입감소분 보전 등 재정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용

출처 :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시장방침), 3p 발췌

- 부수적으로, 본 개정조례안 중 어문규정에 어긋나는 일부 문구는 보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조문대비표 〉

현행	수정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영어 및 창의 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등에게 영어 권지역의 문화체험 및 창의적 역량증진 과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영어 및 창의 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등에게 영어 권지역의 문화체험 및 창의적 역량증진 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정찬일

별첨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별첨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첨3. 참조, 제로페이 관련 사용료 등 감면 관련 조례 현황

〈 제로페이 관련 조례 제출 현황 〉

연번	조례명	감면대상	감면율	소관부서
1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장 입장료, 체육시설 개인연습사용료, 생활체육교실 수강료	다음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입장료: 30% 사용료: 10% 수강료: 5%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	도시공원 조례	서울대공원 등 입장료, 공원시설 이용료	다음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입장료: 30% 이용료: 1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3	서울상상나라 운영 조례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4	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립과학관 관람료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5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시민청 시설 대관료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6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프로그램 이용료 및 시설 이용료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7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8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 등의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형제작 비용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 정책과)
9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성발전센터 강좌 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10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사용료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11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한강공원 내 유람선, 체육·휴양시설 등 이용료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12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립청소년수련관 등의 체육시설, 강당 등 사용료 및 예체능 등 강습료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13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서울50플러스캠퍼스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및 강당, 교실 등 사용료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 원과)
14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인재개발원 내 강의·체육시설 사용료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행정국 (인력개발과)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15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회의실, 강당 등 사용료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행정국 (자치행정과)
16	영어 및 창의마을 조례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핑 및 서울영어마을 수유관악캠핑 이용료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17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립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사용료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참고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대한 규칙	서울자유시민대학 강좌 학습비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